

제천시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960
----------	-----

제출년월일 : 2005. 1.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 안 이 유

제천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청정제천21 업무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총칙(제1장)

- 목적(조례 제정근거 및 목적), 기본이념, 정의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제2장)

- 자치단체, 주민, 기업별 책무

○ 협의회 기능과 구성(제3장)

- 기능(청정제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 구성(위원, 사무국, 위원회)

○ 협의회 운영(제4장)

- 회의(정기회의, 임시회의), 의안의 제출 및 처리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청회 등의 개최,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 재정지원 등(제5장)

- 경비의 지원, 지원방법 및 정산, 사무의 위탁, 감독

-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의 추진

3. 근 거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4. 의 안 전 문 : 붙 임

첨 부 : 1. 조례제정 표준준칙 사본(환경부 정책총괄과-1383(2004.6.21))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 21(Agenda 21)의 제28장과 제천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제천21”이라 함은 시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정제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③시장은 수립된 청정제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한다.

제5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청정제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 의 기능과 구성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정제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청정제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청정제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청정제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청정제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회장3, 감사2, 다수의 고문과 일반회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협의회장·부회장·감사는 위원 및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②협의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의사결정

부서인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서인 각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천시외의 경제, 사회, 환경, 교통 등의 통합적인 청정제천21의 실천을 위해 시 관련 부서의 장(국장, 과장)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시의회 의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보궐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협의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①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회의) ①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15조(기타)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며, 청정제천21설치·운영및지원조례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에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에의 운영비

2. 청정제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동참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공고 제 2004 - 403 호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20일
제 천 시 장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제정안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청정제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및지원조례제정안
2. 제정이유

제천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청정제천21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총칙 : 목적(조례 제정근거 및 목적), 기본이념, 정의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 협의회 기능과 구성
- 협의회 운영
- 재정지원 등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9월 8일 까지 제천시청(참조 자연환경과) 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0-5452 . FAX640-5459. E-mail : kcw5878@hanmail.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지방의제21추진기구명)설치·운영및지원조례

(자치단체명)조례 제○○○호(20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92.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 21(Agenda 21)의 제28장과 (자치단체)환경기본조례 제○조의 규정에 따라(환경기본조례가 없거나 동 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추진기구명)(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제명)”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자치단체)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자치단체의 장의 책무)①(자치단체의 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 기능과 구성

제6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명)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지방의제명)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방의제명)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①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치단체)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자치단체)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자치단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8조(사무국)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제9조(위원회)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회의)①협의회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①협의회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

거나 협의회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6조(경비의 지원)(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①협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자치단체)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감독)(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환경하남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2004.11.25 하남시조례제75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992. 6.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하남시환경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환경하남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하남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합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 (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 의 기능과 구성

제6조 (기능)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 기업 등이 호혜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음 각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하남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환경하남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환경하남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협의회장과 협의회부회장을 포함한 5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과 협의회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의제21실천을 위해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임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장의 직무등)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제11조 (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회의) ①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협의회장인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의 결산에 관한 민정정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흥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업무권 통틀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8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항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9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항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정부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청산되었을 때에는 해당사업종결보고서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행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정화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청정화사업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임명·리하여 그 업무를 확인·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지구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